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

2020년 3월 26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3월 26일(목)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0. 3. 25.(수) 15:00	담당부서	재생에너지산업과
담당과장	오승철 과장(044-203-5370)	담 당 자	윤도경 사무관(044-203-5377)

육상풍력 사업 환경성 검토 강화

- 산업부, 발전사업 허가 기준 개정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**3월 26일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「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**(이하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)**를 개정 완료했다고 발표했다.**

○ 이번 제도 개선은 산업부가 **지난해 8월 23일 발표한 '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'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.**

□ 그동안 **육상풍력 발전사업은 환경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추진**되어 이후 **환경·입지 규제 저촉, 주민 반대** 등으로 사업이 지연·포기되는 경우가 많았다.

○ 이에 따라, 산업부는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 요건으로 환경성 검토를 추가함으로써 **사업 초기단계부터 환경적 영향과 입지 규제 저촉 여부 등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**하도록 하여 **사업추진 과정에서 불확실성 감소**와 **풍력보급 확대에 기여**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□ 이번에 개정된 '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'의 주요 내용은

○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단계에서 **❶환경성 검토를 위한 근거 규정과 ❷**사업 대상지에 국유림이 포함될 경우 **산림청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.**

※ 발전사업 세부 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(안) 내용

(별표 1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 / 3호 사업이행능력)

- '육상풍력발전의 경우 환경적 측면에서 부지 확보 및 배치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'
- '육상풍력발전 사업 대상지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포함할 경우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6조 및 제52조에 따른 협의권자와 사전협의 결과를 제출할 것'

○ 이 규정을 근거로 산업부 산하 **'풍력발전 추진 지원단'은 '육상풍력 입지지도', 입지컨설팅**(환경부) 등을 **활용해 환경성을 사전에 검토**하고, 그 결과를 전기위원회의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심의 시 제출할 예정이다.

*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: '20.2.6일 에너지공단내 신설, 한전·발전 6사 등 유관기관과 환경, 산림 민간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, 풍력사업 1대1 밀착지원

* 환경부 입지컨설팅 : 지방환경청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환경영향평가전에 예정부지의 입지적정성에 대한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

○ 또한, 산림청과의 **사전 협의도 접수 창구를 '풍력발전 추진 지원단'으로 일원화**해 **사업자 편의 증대와 내실 있는 협의**를 유도할 계획이다.

□ 산업부 관계자는 "재생에너지 3020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수적"이라며 "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육상풍력 발전사업 보급·확산을 지속 추진하겠다"고 말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윤도경 사무관(☎ 044-203-537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**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등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**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【별표 1】
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

1. ~ 2. (생 략)

3. 사업이행능력

<table>
<tr><th colspan="2">심사항목</th><th>심사기준</th></tr>
<tr><td colspan="2">(생 략)</td><td>○ (생 략)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사업계획서상의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
(시행규칙 제7조제3항 제2호)</td><td>부지 확보 및 배치 계획
(석탄화력발전은 회처리장 포함)</td><td>○ (생 략)
○ (생 략)
○ 풍력발전의 경우는 풍황자원계측 적용기준 별표2를 충족할 것
<신 설>

○ (생 략)</td></tr>
<tr><td>전력계통의 연계계획</td><td>○ (생 략)</td></tr>
<tr><td>연료 및 용수 확보계획</td><td>○ (생 략)</td></tr>
</table>
</td><td>【별표 1】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-----

<table>
<tr><th colspan="2">-------</th><th>-------</th></tr>
<tr><td colspan="2">(현행과 같음)</td><td>○ (현행과 같음)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사업계획서상의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
(시행규칙 제7조제3항 제2호)</td><td>부지 확보 및 배치 계획
(석탄화력발전은 회처리장 포함)</td><td>○ (현행과 같음)
○ (현행과 같음)
○ (현행과 같음)
○ 육상풍력발전의 경우 환경적 측면에서 부지 확보 및 배치 계획이 실현가능할 것
○ 육상풍력발전 사업대상지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포함할 경우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6조 및 제52조에 따른 협의권자와 사전 협의 결과를 제출할 것
○ (현행과 같음)</td></tr>
<tr><td>전력계통의 연계계획</td><td>○ (현행과 같음)</td></tr>
<tr><td>연료 및 용수 확보계획</td><td>○ (현행과 같음)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/table>